

벌금형 제도의 현대적 가치와 개인정보문제

김운곤*

Monetary Penalty System and Privacy

Woon-Gon Kim*

요약

벌금형은 형벌체계상 자유형보다 가벼운 형벌로 규정되어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범죄행위자에게 실질적으로 자유형 못지않은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자연인인 개인보다 법인이 저지르는 경제사범, 조세범, 기업범죄에서는 범죄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제재 수단이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벌금형을 통한 제재는 형사제재 방법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벌금형제도는 총액벌금형제도로써 부유한 사람에게는 형벌의 위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벌금형의 액수에 차이가 많은데도, 벌금형의 실효기간을 똑같이 함으로써 형사재판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선고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적 형벌로서 가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총액벌금형제도는 일수벌금형제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낮은 벌금형제도는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범칙금제도로 대체하여 사회적 비난이 낮은 범죄행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형벌의 기능수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적인 면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약식절차에서는 기소와 재판절차가 서면으로만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약식명령으로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약식절차에 관계되는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 Keywords : 벌금형, 약식명령, 총액벌금제, 일수벌금제, 개인정보

Abstract

A fine is defined to the criminal penalty which is slighter than imprisonment on a system of criminal penalty, but put practically a seat to imprisonment and similar strong discipline contrivance to commission agent in capitalism societies be doing. Also, did heavy commission, but the corporation time, a fine to consider the respect which cannot impose other criminal penalty, and cannot but impose fine penalty only

• 제1저자 김운곤
• 투고일 : 2015. 5. 7, 심사일 : 2015. 5. 13, 게재확정일 : 2015. 5. 25.
* 조선이공대학교 해양경찰과(Dept.of Maritime Police, Chosun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to this corporation carries out art as important criminal penalty than the commission which a person does.

But fine drawing of our country cannot carry out art scaring to criminal penalty to rich body as aggregate fine drawing, and a lot of, but do abatement duration of a fine so as same, and be most in spite of adjudication criminal sentence occupying at criminal case adjudication, and difference cannot do to an amount of a fine that is carrying well out the art. Therefore, and have to change to the daily fine systemdm which gained because of total fine system in order to carry out value as modern criminal penalty, and a few fines shall exchange to penalty payment system according to complement department canon of Penal Code, and social accusation protects individual information of low commission agent if so, can normally do art accomplishment of criminal penalty.

The system that the maximum can guarantee right of defence of accused has to have to be introduced in procedural a few aspect to pronounce this and a fine. Specially, let explain necessary fact to be related to, and informal procedures understand, and introduction of drawing to be able to get from accord of accused is necessary for accused before charging to informal decree in order cannot be guaranteed right of defence this of accused while consisting in writing of whether accusation and adjudication are procedural at informal procedures, and to supplement respect.

▶ Keywords : Fine penalty, Summary order, Total fine system, Daily fine system, Privacy

I. 서 론

형법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으로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보호 작용이 형법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형법이 발휘하는 힘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익들을 보존하고,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힘이다 [1]. 이러한 형법이 구성원에게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절차와 그에 따른 집행의 정당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간의 형사정책적 이해관계나 행정관청의 이익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성원들의 신뢰를 받는 형법으로 되어야 하며, 또한 집행에서도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황제노역'사건이 불거지면서 우리나라의 형집행에 대한 불신이 표출되었다[2]. 이로 인해 황제노역 판결의 당사자가 사표를 제출하고, 환형유치제 관련 법률의 개정까지 이루어졌다.¹⁾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형사사법제도

관련하여 여러 문제들의 단면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이와 더불어 벌금형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는 모든 가치의 원천이자 최종 귀착점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듯 범죄에 대한 제재 방법에서도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에서 재산형을 중요한 형사제재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벌금형은 형벌체계상 자유형보다 가벼운 형벌로 규정되어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범죄행위자에게 실질적으로 자유형 못지않은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자

원으로 계산하는 일반인의 1만 배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허○○ 전 ○○그룹 회장에게 벌금 1천 16억원을 구형하면서, 선고유예 해달라고 했다. 1심 법원은 벌금 508억원에 하루치 노역을 2억5천만원으로 산정했다. 검찰은 허○○가 귀국하자 노역장에 유치했다가 여론이 들끓자 불과 닷새 만에 노역을 중지하고 벌금 강제환수에 나섰다.

2014년 5월 14일 노역장 유치와 관련된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개정내용을 보면, 제1항에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항을 신설하여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1) 논란의 중심에 선 '황제노역' 판결은 ○○고법 형사1부(재판장 장○○)는 2010년 1월 허○○(72) 전 ○○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노역 대가는 일당 5억원으로 정했다. 통상 5만

연인인 개인보다 법인이 저지르는 경제사범, 조세범, 기업범죄에서는 범죄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제재 수단이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벌금형을 이용한 형사제재 방법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대적 형사제재의 방법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벌금형이 형벌로서 위하력과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총액벌금형제도는 같은 액수의 벌금형이라도 수형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 받는 형사제재의 효과가 다를 뿐만 아니라 재산이 없는 사람은 납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환형유치를 통하여 자유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²⁾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형사제재 수단인 벌금형이 형사제재수단으로서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자유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체 형벌로서 역할이 아니라 벌금형이 주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형사제재 수단으로서 벌금형이 최적화된 형벌로서 사용되기 위한 정당성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벌금형 제도를 실제적인 면과 절차적인 면에서 검토해 보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벌금형의 현대적 가치와 문제

1. 형벌의 목표

형벌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형법에 관한 사고의 핵심주제였다. 형벌이 어떠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형법에도 적합한 것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형법이 존재한 이후 끝없는 다툼과 함께 여러 가지 형법이론들이 나오게 되었다(3). 이처럼 여러 가지 견해로 나뉘어 논란이 되어 오고 있으나, 크게 나누어보면 응보형론과 목적형론으로 대별된다고 볼 수 있다.

벌금형이 응보형론과 목적형론으로 구분지어 어떤 이론과 더 적합한지를 단적으로 따지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벌금형은 목적형론의 성격도 다소 내포하고 있지만 응보형론, 즉 책임에

상응한 형벌을 부과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벌금형의 현대적 가치

벌금형은 수형자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국가에 납입할 의무를 부과하는 형벌이다. 따라서 수형자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면서 심리적 또는 경제적 제한을 가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에 비하여 인도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형벌이다(4).

자유형은 현대사회에서 신체의 자유박탈과 함께 상실감을 줄 수 있는 등 수형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많이 준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으나, 벌금형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합한 형벌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수형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위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과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벌금형이 빈부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고통의 차이는 형벌을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는 대국적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차이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합헌판결을 내리고 있다(5).

그렇지만 벌금형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수형자에게 벌금형의 취지에 맞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형 집행의 공평성과 사회 질서유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환형유치제도를 두고 있다(6). 형법에서는 벌금형의 납입기한과 납입을 담보할 수 있도록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유치명령과 납입기한이 지나도록 납입하지 않을 때 노역장 유치기간의 상한과 하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충 규정으로서 「형사소송법」 제477조부터 제481조, 「재산형 등 집행규칙」이 있다.

2. 벌금형의 실제법상의 문제

2.1. 법적 근거

형의 집행은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벌의 내용을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실현하는 과정이다(7). 「형법」은 형의 집행 장소와 기본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 유치를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하위 규범으로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서 실무적인 집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2. 벌금형과 응보형론

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때, 형사사법제도

2)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25일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는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확정자가 검사에게 사회봉사허가를 신청하면 검사는 다시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 후 법원의 허가서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를 집행하는 제도이다.

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양형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인식될 정도로까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양형에서 책임의 양에 따른 형벌의 부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벌금형은 목적형론의 이론보다는 응보형론과 일치되는 점이 더 높기 때문에 책임의 양에 맞게끔 벌금액수가 정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환형의 환산방법에서도 벌금액수에 따라 자유형으로 환산되는 기간도 비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환형 환산방법은 일반 평균인에게는 1일 5만원으로 환산하면서도 벌금액이 높은 경제인들에게는 1일 수억원을 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황제노역사건에 국민적 분노를 사게 되었고, 이로 인해 2014년 5월 14일 형법 제70조를 개정하고³⁾, 그 판결을 담당했던 법원은 사직하여야 하는 문제까지 낳게 되었다.

2.3. 환형 환산 방법의 문제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69조). 벌금형을 선고하는 법원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기간도 함께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형법 제70조,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⁴⁾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환형유치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형법 제69조 제2항),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형유치에서 형 환산 기준액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으나 황제노역사건이 발생하면서 여론이 들끓자 2014년 5월 14일 형법 제70조를 개정하여 환산 기준액의 구간을 설정하였다. 이는 법원이 진행하는 양형 업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형량의 범위에 큰 폭을 두어 법정형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선고형은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 근대 형사법이 오랜 시행착오와 연구 끝에 얻은 성과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황제노역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벌금형을 환형유치하면서 환산방법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사례에서는 수행자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납부하는 대

신 스스로 자유형으로 대체해서 처벌받고자 하는 사람이 매년 4만 명이 넘는다. 여기에는 서로 반대되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돈이 없는 사람이다. 환형유치를 선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유형에 해당한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실직하였거나 저임금노동자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다른 이유는 이와 반대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다. 법원은 하루의 노역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환산금액을 정하고 이로서 벌금액을 나눈 일수를 노역장 유치기간으로 정하는데 황제노역에서처럼 환산금액을 넉넉하게 계산해 주기 때문에 수백억대 벌금을 교도소에서 자유형으로 받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벌금형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지 못한 탓으로 벌금형보다 인류가 목숨을 걸고 얻어 낸 인류 최고의 가치인 자유를 자진해서 포기하는 문제가 도출되었다.

3. 벌금형의 절차법상 문제

3.1 약식절차의 의의와 위헌성

약식절차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만을 부과하는 간이심판절차를 말한다. 즉 약식절차는 지방법원의 관할 사건 중 검사의 청구로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간이한 특별형식의 재판절차를 말한다.

약식명령은 경미한 사건의 형사사법처리과정에서 벌금·과료 등의 형을 과함으로서 단기 자유형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국고수입의 증대를 기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들이 수행하기 힘든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서 소송경제상으로도 유익하다고 하겠으나, 그 반면에 적절한 운용을 하지 못하면 형벌권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권옹호에 소홀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약식절차는 위험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는 과실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있다. 또한 간단하면서도 정형성을 가진 사건이 계속 벌금형으로 선고되었다면 공판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도 소송경제의 이념에 따라 약식절차로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절차는 피고인의 사회적·심리적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익도 고려된 제도이다(8).

3.2 약식절차의 문제

우리 현행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설계된 절차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식절차와 간

3) 형법의 개정 내용을 보면,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4) 소년법 제62조에서는 선고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환형유치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된 경우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징역형의 기간보다 길더라도 위법은 아니다(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도251 판결).

이공판절차가 있고,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즉결심판절차로 세 종류가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건수와 사법부의 인적 자원 등을 고려할 때, 경미한 사건은 간이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9]. 약식절차는 형사소송절차상에서 꼭 지켜야 할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공개주의, 구두주의, 직접주의라는 원칙이 배제되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수사서류 등에 의존하여 재산형을 부과하는 특수한 형식의 절차이다.

일본에서 약식절차는 공소장일본주의를 배척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며, 법 앞에서 평등권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론이 주장되었었다.⁶⁾ 이러한 점 때문에 일본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약식기소를 할 경우에는 미리 피의자에게 약식절차로 진행되는 점 등을 설명하고, 이를 거부하면 공판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피의자가 약식절차로 진행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약식절차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약식절차에서 부과할 수 있는 벌금 액수도 일정한 금액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약식절차와 관련하여 ① 약식절차는 충분한 법적 청문 없이 판결이 이루어지는 점, ② 검찰과 법원이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 절차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점 ③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약식절차가 없다면 수많은 경미사건들도 정상적인 공판절차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검찰과 법원의 부담이 가중되고, 복잡하고 중대한 범죄에 집중해서 처리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약식절차는 포기될 수 없다고 한다[10].

3.3. 약식절차의 심판대상 문제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48조 제2항에서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약식절차에서는 유죄판결에 따른 벌금,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만을 부과할 수밖에 없고, 공소기각, 면소, 형의 면제, 무죄를 판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약식절차를 담당한 법원은 공소기각, 면소, 형의 면제, 무죄에 해당하는 사유가 기록상 명백하다면 공판절차로 회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약식절차를 도입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6)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는 약식절차에서는 생명형과 자유형을 과하는 것이 아니고, 공판절차에 비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정식 재판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유로 합헌으로 결정하였다(일본 최고재판소 결정, 1948. 7. 29. 형집 2.9. 1115면).

이와 더불어 일본 형사소송절차에서처럼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약식절차가 진행된다면,⁷⁾ 약식절차에서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의 범위를 집행유예가 전제되는 자유형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 약식절차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을 살펴보면 “약식절차에서는 약식명령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법률효과가 벌금형 이외에 선고유예, 운전금지, 추징, 몰수, 폐기처분, 유죄판결의 공시, 법인에 대한 질서위반금, 운전면허정지, 형면제, 집행을 유예하는 1년 이하의 자유형을 부과할 수 있다(독일 형소법 제407조 제1항)”[11].

물론, 약식절차에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한 자유형을 포함하는 것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약식절차를 통해서도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가 전제된 자유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제절차는 정식재판청구절차를 통해서 집중 심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사법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견해로 약식절차는 본질적으로 구두주의, 직접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서면절차이기 때문에 법관이 행위자에 대한 인상을 가질 수 없다는 점,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일정한 제한이 붙은 자유형을 선고할지 여부는 서면심리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법관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사안을 심리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약식절차 심판대상의 자유형에로의 확대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12].

III. 벌금형 제도의 과제

1. 실체적인 면에서 개선과제

1.1. 환산방법의 개선

벌금형을 자유형으로 환산할 때, 우리 형법 제70조와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법원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기간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형법 제69조 제2항에서는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환형유치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환산 기준액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7) 독일에서는 공판절차로 진행 중에도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구두로 청구할 수 있다(독일 형소법 제408조의a).

없었다.

이는 근대 형사법이 오랜 시행착오와 연구 끝에 얻은 양형에 관한 업무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양형을 이처럼 법원의 재량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법원을 구성하는 판사들의 양심을 믿었기 때문에 법정화로 생기는 부작용보다 법관의 양심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이 더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것이라는 결과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믿음은 황제노역 등 이제까지 법원의 재량으로 이루어졌던 환형 환산방법이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여론은 2014년 5월 14일 형법 제70조를 개정하게 만들어, 환산 기준액의 구간을 설정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환산 기준액의 구간 설정도 국민들의 법감정과 일치하지 않은 듯 하다. 따라서 일정액이 넘는 경우는 형법 제69조 제2항의 기간 제한 규정에 따라 벌금액수를 3년으로 나누어 환산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방법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1.2. 일수벌금제도의 도입문제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총액벌금제도는 경제적 약자에게는 범죄행위에 따른 책임의 양보다 큰 부담을 주는 형벌작용이 이루어지고, 경제적 강자에게는 책임의 양보다도 적은 형사제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범죄행위의 책임에 따라 벌금을 일수로 정하고 행위자의 자력에 따라 1일의 벌금액을 정하는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⁸⁾ 이 제도는 총액벌금제도가 수형인의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부담의 정도가 다르다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배분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3].

1.3.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 도입문제

현행법상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인정되지만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자유형에서는 집행유예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즉 벌금형보다 무거운 자유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허용되면서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에서 집행유예제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었다.⁹⁾

목적형론적인 면에서 본다면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된다면 수행자의 교정처우에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절차적인 면에서 개선과제

2.1. 재청 약식제도의 도입 문제

비교법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일본에서 활용도가 높은 재청 약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재청약식이란 일본의 제도로 피의자조사부터 벌금 가납의 절차까지가 당일에 이루어지는 제도이다[14].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사건의 신속한 처리, 사건에 따른 송달 문제, 약식 명령에 따른 벌금 납부의 효율성과 피고인의 시간과 비용 절감 및 사건으로부터 해방 등의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제도는 약식절차의 엄정성과 적정성의 확보, 약식명령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신속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사법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15].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한다면 이와 같은 장점과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2. 사전동의제도의 도입 문제

검사가 약식절차로 기소하려면 피고인의 방어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사전에 피의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⁰⁾ 그렇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사전 동의제도는 반영되지 않고 사후에 정식재판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점적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사안의 경중 등을 검토하여 벌금형으로 구형할 수 있는 사안이고, 그 사안을 적용할 수 있는 형법 규정에 벌금형을 법정하고 있다면 약식절차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은 검찰관이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면, 약식명령으로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약식절차에 관계되는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공판절차를 통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며, 약식절차로 청구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 받아야 한다.¹¹⁾ 따라서 일

8) 2009. 11. 26. 조승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일수벌금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9) 2009. 2. 19. 홍일표 의원의 대표발의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10) 2006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도 약식절차를 모델로 한 '서면신속절차'에서 검사가 서면심판을 청구할 때 피의자에게 서면심판을 청구한다는 취지와 양형에 관한 의견을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안을 제출하였었다(동 개정안 제 449조 제3항).

11) 日本刑事訴訟法 第四百六十一條之二 ① 檢察官は 略式命令の請求に際し 被疑者に對し、あらかじめ 略式手續を理解させるために必要な事項を説明し、通常の規定に従い審判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旨を告げた上、略式手續によるこ

본에서는 피의자가 정상적인 공판절차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고 하면 검찰에서 독단적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설명 및 동의절차는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위헌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절차이다. 따라서 이를 검찰이 대신하게 할 수 없으며,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고 설명서를 피의자에게 송부하여 약식절차로 기소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 받아 약식절차로 기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16]. 이처럼 일본의 약식절차는 공판절차로 진행할 것인지¹²⁾ 약식재판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약식절차의 위헌성에 논란이 되고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경찰 수사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미진, 인권 침해 등의 사례 등 적법절차의 준수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약식절차 또는 공판절차로 기소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피의자의 의사로 판단하는 것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형사소송절차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유리하다고 사료된다[17].

IV. 벌금형과 개인정보

정보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자신의 정보 중에서 어떤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었는지 알 수 없고, 상대방이 자신의 정보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행동하는 자유를 많이 제약받게 될 것이다[18].

더욱이 상대방이 자신의 범죄경력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행동하는 자유는 크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중대한 범죄행위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회적 제약을 받는 것이 감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오늘날처럼 위험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고의 행위가 아닌 과실행위로서도 벌금형벌은 쉽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벌금형 때문에 사회적 제약을 받는다면 그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일본최고재판소의 “범죄경력 조회”사건 판결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범죄경력”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중 다른 사람에게 가장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의 하나이다”라는 한 재판관의 보충의견으로 나온 사실에서처럼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다[19].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는 그게 진실한 사실일지라도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로서 법률상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범죄경력”은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고도의 프라이버시이다[20].

우리나라 대법원도 피해자들이 전과가 많다고 말한 피고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21]. 또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후보자 등록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제약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호와 같이 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실효기간을 2년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가의 문제는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1. 형법의 보충성원칙과 벌금형

새로운 범죄유형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언론은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국가형벌권의 개입을 먼저 거론하면서 빨리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여론을 선도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범죄는 사회구조적 바탕위에서 발생하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석과 대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 국가형벌권의 개입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으로서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항상 형법의 최소화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작은 정부’라고 해서 국가경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지 않은 것처럼 ‘작은 형법’이라고 해서 형법의 규율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22]. 이러한 점에서 검토하여보면 형법적 효력은 별로 없으면서도 그 형을 선고받은 개인에게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과료는 범칙금으로 대체하더라도 형사재적 효과는 거의 같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범칙금을 부과하였음에도 이의제기를 하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재판절차를 통해서 구제받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여, 범칙금 제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とについて異議がないかどうかを確めなければならない(검찰관은 약식명령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피의자에게 미리 약식절차의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원할 경우 통상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린 다음에 약식절차로 기소해도 이의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2. 형벌과 형의 실효

형사재판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형을 선고하고, 검사는 그 선고된 형을 집행하며, 교정기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이 종료되면 형벌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된 형의 집행이 완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이익적 처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다 해도 범죄경력이 많은 사람에게 불리한 형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형법 제35조와 형사특별법상의 누범가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제한 요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적용대상에 제외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 밖에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와 제19조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제한하고 있는 등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23].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형을 집행 받았음에도 계속적인 제한을 받는다면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제한하여 또 다른 사회안전망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범죄경력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즉 이처럼 형의 확정으로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미래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없게 할 목적인 것이 형의 실효이다.

따라서 벌금형을 현재처럼 유지할 경우, 형의 실효에서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구분하여 실효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즉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되면 실효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침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벌금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범죄행위자에게 실질적으로 자유형 못지않은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자연인인 개인보다 법인이 저지르는 경제사범, 조세범, 기업범죄에서는 범죄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제재

수단이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벌금형을 통한 제재는 형사제재 방법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의 형사사법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벌금형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형사제재의 한 수단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벌금형 제도는 하루의 노역을 금전으로 환산하는 방법에서 차별화 되고 있는 점 등에서 불신을 낳고 있어 형사제재로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과 관련된 형사절차적인 문제와 실제적인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첫째 환산방법의 개선 문제이다. 물론 이 문제는 2014년 5월 14일 형법 제70조를 개정하여 환산 기준액의 구간을 설정하였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저지르는 경제범죄에서는 높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를 고려한다면, 개정안의 내용대로 구간에 따른 환산이 되더라도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듯 싶다. 따라서 국민들의 법감정과 일치되는 구간을 설정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으면 일정액이 넘는 경우는 형법 제69조 제2항의 기간 제한 규정에 따라 벌금액수를 3년으로 나누어 환산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방법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수벌금제도와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범죄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벌금을 일수로 정하고 행위자의 자력에 따라 1일의 벌금액을 정하는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수형자의 교정처우에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는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청 약식제도와 사전동의제도의 도입 문제이다. 피의자조사, 약식기소, 약식명령, 벌금 가납부가 당일에 이루어지는 제도로 사건의 신속한 처리, 사건에 따른 송달 문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납부의 효율성과 피고인의 시간과 비용 절감 및 사건으로부터 해방 등의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약식명령으로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약식절차에 관계되는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면, 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낮은 벌금형제도를 범칙금으로 대체하는 제도이다. 「공직선거법」 등에서 제약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형벌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00만원 이하의 형벌은 범칙금제도로 대체하여 위험사회 속에서 과실범

죄로 받는 벌금형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Winfried Hassemer, *Warm Strafe sein muss*, Translator : Bae Jong-Dae · Yoon Jae-Wang, Nanam Publishing Co., 2011, p.130.
- [2] Dona Weekly Magazine, "Problem of detention in labor house", Vol. 931, 2014. 3. 31, p.57.
- [3] Park, Jae-yoon, "Comments, General Provision of Criminal Act(2)", Korea Law & Administration Research Institute, 2011, p.500.
- [4] Kim, Hye-Kyung, "Fines to be proportional to imprisonment", Korea Journal of Criminology, Vol.24 No.2, 2012, 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 p.111.
- [5] Japan Supreme Court, 1950. 6. 27. Case of Criminal, 46, 958.
- [6] Jo, Dae-hwan, "Problems of detention in a work", Legal Profession Journal, Vol.47 No.3, 1998, Korea Association of Legal Profession, p.6.
- [7] Kim, Il-soo · Seo, Bo-hak, *Particulars of Criminal Law*, Pakyoungsa, 2002, p.789.
- [8] Meyer-Goßner, §407 Rn. 1: Zipf, S. 230.
- [9] Song Kwang-soub, "The Current utilization of summary proceedings, its drawback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Prosecution Service, Vol.40, 2013. 9, Supreme Prosecutor's Office, p.179.
- [10] Roxin/Schünemann, *Strafverfahrensrecht*, 26. Aufl. 2009, S. 489-490.
- [11] Fischer, *Karlsruher Kommentar, StPO*, vor § 407 Rn. 2.
- [12] Supra Note 9, p.200.
- [13] Supra Note 3, pp.503-504.
- [14] Jang, yoon-seok, "the Improvement of Summary proceedings", Legal Profession Journal, Vol., 47 No. 2, 1998, Korea Association of Legal Profession, p.168.
- [15] Supra Note 9, p.207.
- [16] You, Keun-seob, "Japan summary proceedings", Prosecutor, Vo., 95, 1987, p.336; Supra Note 14, pp.166-167.
- [17] Supra Note 14, p.166.
- [18] Hong, Jin-young, "The right of privacy decision and dispute resolution", Study on the civil case, Vol., 35, 2013, 02., Pakyoungsa, pp.743-744.
- [19] Japan Supreme Court, 1981. 4. 14. Case of Civil, Vol., 35, No.,3, p.620; Kim, Young-cheol, "Study on the Protective Privacy in Criminal Law", Dissertation of Kunkook University, 1996, pp.43-44.
- [20] Kim, Young-cheol, "Case of Protective Privacy in Criminal Law", Justice, Vol., 30, No., 1., 1997, Korea Legal Center, p.71.
- [21] SCP 1993. 3. 23. 92Do455.
- [22] Lim, Woong, "A study on the Decriminalization", Sungkyunkwan Law Review, Vol., 19, No., 3, 2007. 12., Sungkyunkwan Comparative Law Research, p.466.
- [23] Rhee Joo Won, *Zur Auswirkung der Strafaufhebung auf Urteile im koreanischen Strafaufhebungsgesetz*, Lawyers Association journal, No.469, 2004, Korea Association of Legal Profession, p.214.

저 자 소개



김 윤 곤

1993: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1995: 조선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1998: 조선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현 재: 조선이공대학교

해양경찰과 교수

관심분야: 형사법, IT

Email : john1216@cst.ac.kr